

#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06
----------	------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정이유

-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6월 30일 ~ 7월 20일(20일간)
- 의견내용 : 의견 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 규제개혁 관련협의 :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요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지역일 것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서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이면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 사업 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팀장 직위·성명	상권지원팀장 김정순
	실무관 성명·전화	이영규 (790-6876)

[별지 제1호서식]

##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팩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 상권 전문관리자 [ ] 등록 신청서 [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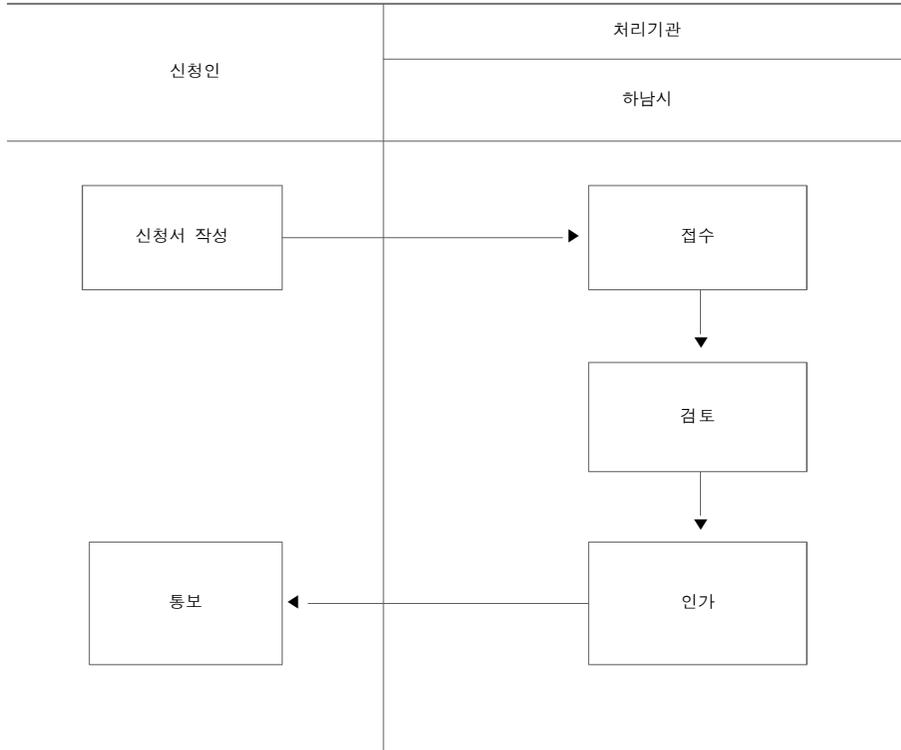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자율상권조합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규등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등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관계법령 발췌서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상권법)  
[시행 2022. 4. 28.] [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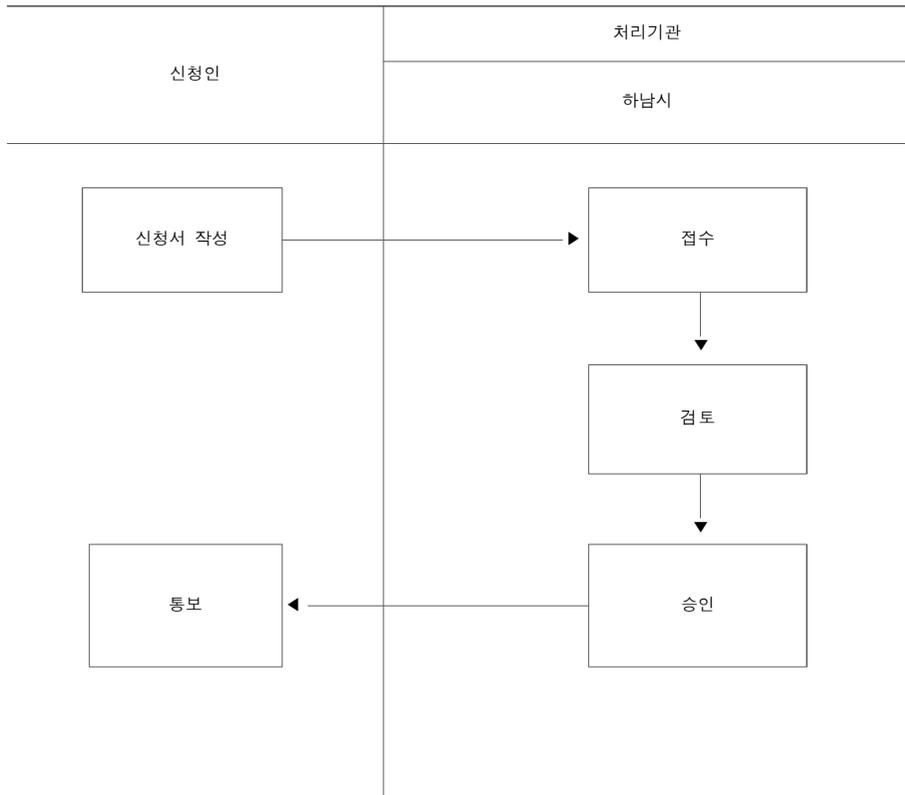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② 시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경영지원 사업
  4.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지역상권법 시행령)  
[시행 2022. 4. 28.] [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제정]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